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헬리콥터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자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거나,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경우에도 1989년 1월 1일 전에 제작되거나 최대이륙중량이 3,180킬로그램 이하인 헬리콥터의 경우에도 비행기록장치를 갖추도록 하되, 이를 대신해 대체장치 장착을 허용하도록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52호, '23.09.12. 공포, '24.3.1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장비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체장비 장착 세부기준 마련(안 제2장 4.3A.1~4.3A.4, 안 제3장 4.7A.1~4.7A.4, 안 제4장 4.7A.1~4.7A.4)

비행기록장치 대신 대체장비를 장착하는 대상, 대체장비 성능요건, 장착 기준, 운용관리 신설

나. 항공기(헬리콥터)사용사업자의 초기비행훈련 수행요건 추가(안 제4장 7.2.8, 별표 7.2.8)

항공기(헬리콥터)사용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초기비행훈련 시 운용할 항공기와 수행할 임무 형태에 적합하도록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현행	개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전화 044-201-4323, 4273)